

찬바람이 부는 계절, 연탄으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 지식경제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탄가격 동결 -

- 지식경제부는 최근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 요금도 최소한의 원가반영을 위해 오르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서민연료인 연탄가격을 동결하기로 함

★

연탄 공장당가를 개당 373.5원으로 동결하고, 연탄 원료인 무연탄 가격은 생산원가 인상을 감안하여 15% 인상하며 이로 인한 연탄 생산원가 상승분(개당 67원)은 정부 재정에서 연탄 제조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함
- 그간 지식경제부는 석탄산업의 기반이 쇠퇴되는 속도를 조절하고 서민에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 왔음

<연탄가격 인상추이>

구 분	'89~'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인상률	동결	동결	동결	10%	동결	동결	동결	20%	30%	30%	동결

- 연탄가격은 동결하지만 연탄제조용 중간재인 석탄가격은 생산원가(임금 등) 증가분만큼 가격을 인상하게 된 바, 석탄가격 인상분은 정부예산(연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연탄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또한 과거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탄가격을 지속 인상해 왔는 바('07~'09, 년 20~30% 인상), 이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올해에도 역시 시행할 계획임

○ 연탄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보조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가구당 169,000원을 지원할 예정

★ 정부는 '07.4월부터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0년도에는 79,263가구에 가구당 169,000원 지원하였음

□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이와 연계하여 석탄생산지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폐광지역이 자체발굴한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을 내년부터 국비로 예산지원할 계획임

★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자립형경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재부 예산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2,791억원(국1,295.5, 지1,295.5 민200)을 확보할 계획

○ 내년부터 15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2012년 정부예산으로 50억을 우선 배정하였음

※ 참고1.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개요

참고2.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참고 1]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총사업비	개 요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	391 (국 195.5, 지 195.5)	○위 치 : 태백시 동점동 175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사업규모 : 286,700㎡ ○유치업종 : 연구·지원·문화시설,제조업체(50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	574 (국 187, 지187, 민자 200)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산150(육백산 일원)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한방체험장, 건강레저 시설, 4계절 허브 화훼단지 조성등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187 (국 93.5, 지 93.5)	○위 치 : 도계읍 심포리 111-1번지일원 ○사업기간 : 2012 ~ 2015년 ○사업내용 : 유리공예센터, 유리 조형연구소 유리박물관, 유리창작체험스튜디오 유리갤러리, 유리공방 등
당나귀와 봄솔레이 체험마을 조성사업	142 (국 71, 지 71)	○위 치 : 영월 남면 북쌍리 임463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사업내용 : 폐도로를 활용한 여가·레저·편 의시설 등
상동온천 및 산악 레포츠 개발사업	257 (국 128.5, 지 128.5)	○위 치 : 영월 상동읍 내덕리 산10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사업내용 : 온천시설, 임도(운탄도로)를 활용한 MTB레포츠 등
산채·라벤더 재배 단지조성 및 가공 공장 건립	232 (국 116, 지116)	○위 치 : 정선 고함읍 고한리 산216-36번지 ○사업기간 : 2012 ~ 2015 ○사업내용 : A=291,029㎡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라벤더 허브공원조성, 가공공 장(2동), 건조시설, 체험장(5동) 전시관 및 판매시설 등

사업명	총사업비	개 요
신동 묵은지 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81 (국40.5, 지40.5)	○위 치 : 정선 신동읍 예미리 794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사업내용 : A=47,943㎡ 시범사업장, 저장고(숙성토굴형), 콩 발효 시범사업장, 묵은지체험장가 공공장(2동) 식당 매점 등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	134 (국 67, 지 67)	○위 치 : 정선 신동읍 방제리 437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2 ~ 2015 ○사업내용 : A=298,659㎡, 체험승마장 조성, 마필구입, 친 환경마사 설치, 외승 코스조성, 마육산업유치(민간) 등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49 (국 24.5, 지 24.5)	○위 치 : 정선 신동읍 예미리 858번지일원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사업내용 : A=9,702㎡ 물류센터, 냉동·냉장시설, 부대시 설(판매시설, 창고 등)
폐광지역 별빛마을 조성	187 (국 93.5, 지 93.5)	○위 치 : 보령 성주면 성주리 산37-1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2~2015 ○사업내용 : 별빛마을 조성 (숙박시설, 편의시설, 판매 및 지원시설)
전통식품 육성 산업단지 조성	157 (국 78.5, 지 78.5)	○위 치 : 화순군 능지면 민수리 556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2 ~ 2014(A=132,000㎡) ○사업내용 : 산업단지 기반조성, 연구시설 유통회사, 식품제조, 가공공장 등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400 (국 200, 지 200)	○위 치 : 문경시 신기동 740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09 ~ 2015 ○사업내용 : 공단조성 A=439,686㎡ ○사 업 비 : 400(국비 200, 지방비200) *지방비 기투자 190억원
합 계	2,791 (국1,295.5, 지1,295.5, 민자200)	

[참고 2]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15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1. 8. 1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석탄광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갱도굴진비, 차액보전금(제9조제3호)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kcal/kg)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kcal/kg)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53,60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47,92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42,2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36,56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mm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9. 11. 1부터	373.50	391.2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kg)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km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km초과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2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2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1. 8. 1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2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1.1.1~7.31 기간의 산재보험료는 2011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 2011.8.1 이후는 평균 58.2%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료율(354/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2011.1.1~7.31	2011.8.1 이후
120% 이상	산재(확정)보험료의 70.00% 해당액	산재(확정)보험료의 50.92500% 해당액
115% 이상 120% 미만	72.50% 해당액	52.74375% 해당액
110% 이상 115% 미만	75.00% 해당액	54.56250% 해당액
105% 이상 110% 미만	77.50% 해당액	56.38125% 해당액
95% 초과 105% 미만	80.00% 해당액	58.20000% 해당액
90% 초과 95% 이하	82.50% 해당액	60.01875% 해당액
85% 초과 90% 이하	85.00% 해당액	61.83750% 해당액
80% 초과 85% 이하	87.50% 해당액	63.65625% 해당액
80% 이하	90.00% 해당액	65.47500% 해당액

나. 단, 채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1.1.1~7.31 기간에 80%, 2011.8.1 이후 58.20%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1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1년 최고판매가격 고시 이전까지의 가격인상 소급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1.1.1~7.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지원단가(13,975원/톤)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탄 광 명	지원대상물량(톤)	지원단가(원/톤)
대한석탄공사	627,666	13,975
(주)경 동	466,666	
(주)태백광업	59,487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M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M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 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1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2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2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1. 8. 1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2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1.1.1~7.31까지 판매량 : 개당 205.25원

나. 2011.8.1 이후 판매량 : 개당 272.25원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1.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1.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차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2011.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 물량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2010. 11. 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갱도 · 지주 · 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도	지주	규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수평갱도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사갱도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원/톤)

선박규모별 구분		2,000DWT 이상	2,000DWT 미만~ 1,500DWT 이상	1,500DWT 미만~ 1,000DWT 이상	1,000DWT 미만~ 500G/T 이상	500G/T 미만
전남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 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 상기 보조단가는 2011.1.1 목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별표3>

일반 화물자동차 운임표

(단위 : 원)

구분	2톤 이하	2.5톤 이하	3톤 이하	3.5톤 이하	4톤 이하	4.5톤 이하	5톤 이하	5.5톤 이하	6톤 이하	6.5톤 이하	7톤 이하
10km까지	31,170	34,440	36,450	38,450	40,180	42,300	45,990	50,180	54,450	58,390	60,100
20	41,270	45,310	48,040	50,830	53,240	56,150	61,500	67,490	73,620	79,300	81,710
30	51,370	56,510	59,820	63,170	66,040	69,590	75,410	80,750	88,630	94,780	97,640
40	60,810	66,770	70,660	74,650	78,120	82,280	89,080	96,750	106,020	111,840	115,200
50	67,290	72,930	77,250	81,710	85,510	90,120	97,840	106,510	115,420	123,560	126,970
60	70,600	76,550	81,140	85,860	89,930	94,860	103,480	113,940	123,050	132,000	136,150
70	74,420	80,730	85,670	90,720	95,070	100,370	109,840	120,490	131,400	141,470	145,720
80	77,950	84,620	89,870	95,240	99,890	105,520	115,890	127,460	139,320	150,340	154,830
90	81,400	88,400	93,960	99,650	104,570	110,520	121,700	134,130	146,880	158,740	163,500
100	84,460	91,810	97,650	103,600	108,800	115,050	127,050	140,390	154,060	166,820	170,290
120	104,470	110,780	116,110	122,190	128,100	137,450	147,350	158,190	168,800	178,800	172,640
140	112,500	119,380	123,060	127,560	131,980	136,320	149,040	160,260	172,420	184,400	186,930
160	118,390	127,340	131,370	136,290	141,110	145,830	159,920	172,360	185,850	199,080	199,210
180	123,110	130,780	134,180	138,520	142,770	146,930	162,640	176,600	191,620	206,370	206,720
200	129,210	137,300	141,780	147,200	152,200	161,260	173,680	187,770	203,000	217,950	220,900
230	133,510	141,930	146,660	152,370	157,970	163,450	178,740	192,170	206,810	221,130	224,150
260	141,060	150,070	155,160	161,270	167,310	173,210	188,890	202,630	217,620	232,340	235,470
290	156,250	166,360	172,230	179,220	186,100	192,820	209,260	223,580	239,280	254,710	258,180
320	162,620	171,840	177,950	185,240	190,840	197,790	214,140	230,200	245,960	261,430	264,980
350	177,660	187,910	194,730	202,880	209,180	216,940	234,030	250,650	267,270	283,400	287,260
380	185,210	195,940	203,140	211,710	218,340	226,500	243,940	261,090	277,900	294,400	298,410
410	200,280	212,000	219,940	229,380	236,690	245,660	263,870	281,720	299,220	316,410	320,710
460	215,360	228,330	236,770	247,030	255,040	264,730	283,730	302,290	320,520	338,390	343,000
510	230,430	244,140	253,560	264,680	273,380	283,970	303,630	322,900	341,820	360,380	365,310
510km초과 150km마다	11,830	12,940	14,650	14,700	16,850	16,950	18,400	19,300	19,350	20,880	21,500
구분	7.5톤 이하	8톤 이하	8.5톤 이하	9톤 이하	9.5톤 이하	10톤 이하	10.5톤 이하	11톤 이하	11.5톤 이하	12톤 이하	초과0.5톤마다
10km까지	61,890	67,020	71,460	75,830	79,620	84,020	87,720	92,060	94,330	96,620	2,290
20	84,110	88,500	93,390	98,280	102,370	107,260	111,240	116,040	118,930	121,830	2,890
30	100,470	108,990	114,310	119,650	123,990	129,250	133,480	138,770	142,180	145,590	3,420
40	118,560	128,630	134,400	140,170	144,810	150,540	155,030	160,720	164,680	168,670	3,970
50	130,980	142,030	148,710	155,380	160,820	167,440	172,670	179,260	183,720	188,140	4,440
60	140,140	151,930	158,820	165,720	171,310	178,190	183,590	190,400	195,130	199,830	4,700
70	150,000	162,490	169,670	176,840	182,610	189,730	196,340	202,420	207,430	212,430	5,020
80	159,380	172,580	180,040	187,480	193,410	200,820	206,570	213,890	219,200	224,490	5,300
90	168,300	182,150	189,870	197,530	203,620	211,260	217,150	224,740	230,310	235,870	5,600
100	175,310	189,650	196,550	204,340	210,460	218,140	224,090	231,780	237,500	243,250	5,770
120	178,440	195,480	200,610	207,240	215,630	222,330	228,950	237,610	243,490	249,380	5,890
140	188,680	211,630	213,370	220,300	229,160	236,140	243,150	252,240	258,490	264,750	6,280
160	201,000	222,630	223,530	231,750	242,000	250,340	258,650	269,180	275,690	282,160	6,480
180	208,780	231,170	233,960	242,430	253,000	261,540	270,070	280,940	287,910	294,900	6,980
200	225,670	249,790	252,620	261,590	272,840	281,880	290,920	302,460	309,990	317,520	7,530
230	229,000	253,200	255,810	264,670	275,810	284,770	293,690	305,120	312,730	320,330	7,600
260	240,570	265,760	268,310	277,380	288,870	298,040	307,190	319,000	326,930	334,890	7,950
290	263,780	283,590	293,300	302,840	315,000	324,640	334,250	346,720	355,380	364,040	8,650
320	268,430	291,250	295,490	304,950	317,110	326,660	339,060	347,630	357,380	366,070	8,730
350	291,100	307,080	319,640	329,520	342,340	352,290	365,380	375,440	384,870	394,250	9,400
380	302,290	318,200	331,190	341,390	354,660	364,940	378,460	388,830	398,570	408,320	9,750
410	324,900	342,320	355,870	366,390	380,230	390,860	404,940	415,640	426,090	436,510	10,450
460	347,470	368,920	382,600	393,060	407,020	417,570	431,810	442,450	453,550	464,670	11,120
510	370,100	391,640	406,100	417,110	431,840	446,000	458,020	469,220	481,030	492,830	11,800
510km초과 150km마다	22,970	23,650	24,090	24,400	24,670	24,970	25,060	25,060	25,830	26,470	640

※ 운임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